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부천도시공사 건설공사 품질관리규정

제정 2018.06.18. 규정 제4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부천도시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품질계획의 수립 및 품질 시험의 검사 항목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개발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부천도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실시하는 모든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관하여는 관계 법령 및 규정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품질보증계획”이란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건설업자”라 한다)가 제4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한 품질 및 공정관리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2. “품질시험계획”이란 건설업자가 제8조의 건설공사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해 시험시설 및 인력배치 등의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3. “품질시험 및 검사”란 건설업자가 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시험 및 검사를 말한다.

제4조(품질보증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등) 품질보증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써 총공사비(관급 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는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써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3. 해당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 건설공사

제5조(품질보증계획 수립기준 등) 품질보증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인 KS Q ISO 9001 등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공사가 해당 건설공사의 성질상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영자 책임
2. 품질시스템
3. 계약검토
4. 설계관리
5. 문서 및 자료 관리
6. 구매
7. 고객지급품의 관리
8. 제품식별 및 추적성
9. 공정관리
10. 검사 및 시험
11. 검사·측정 및 시험장비의 관리
12. 검사 및 시험상태
13. 부적합품의 관리
14. 시정 및 예방조치
15. 취급, 보관, 포장, 보존 및 인도
16. 품질기록의 관리
17. 내부품질 감사
18. 교육훈련
19. 서비스
20. 통계적 기법

제6조(품질보증계획의 수립절차) ① 수급인이 품질보증계획을 세울 때에는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 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착공하기 전에 공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 품질보증계획을 제출받은 공사는 품질보증계획의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수급인으로 하여금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① 공사는 수급인이 세운 품질보증계획에 따라 품질관리를 적정하게 수행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 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공사에게 알려야 한다.

⑤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을 행정기관의 장이 실시한 연도에는 공사가 따로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8조(품질시험계획수립 대상공사의 범위 등) 품질시험계획을 세워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총공사비가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2. 연면적이 66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3. 총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제9조(품질시험계획수립) 품질시험계획은 별표 1의 품질시험계획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0조(품질시험계획의 이행여부 확인) ① 공사는 수급인이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

를 수행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② 공사가 품질관리 업무의 수행여부를 확인하고자 할 때에는 수급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공사가 이행여부 확인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급인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수급인은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공사로 알려야 한다.

④ 공사는 품질관리업무의 이행여부 확인을 국·공립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1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기준) ① 품질시험 및 검사의 기준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의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별표 2를 따른다.

② 수급인은 다음 각 호의 재료에 대하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시간경과 또는 장소이동 등으로 인하여 재료의 품질변화가 우려되어 발주자가 품질시험 또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2.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품
3. 「주택법」등 관계 법령에 따라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재료

제12조(품질시험검사를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 품질시험 및 검사의 실시에 필요한 시험실의 규모, 시험·검사 장비의 설치와 시험 및 검사요원의 배치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을 따른다.

제13조(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활용) 품질시험 또는 검사 성과의 관리 활용 방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현황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를 작성하여야 하며,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 2종시설물 및 3종시설물에 관한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는 건설공사가 완공된 때에 같은 법 제2조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른 관리주체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제14조(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 ① 품질시험 중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함이 적절한 시험은 현장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품질시험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97조에서 정하는 국립·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 검사 등을 대행시킬 수 있다.

② 품질시험 및 검사의 대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품질시험 검사 의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공사 감독자의 봉인을 받아야 한다.
3.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실시한 품질시험 및 검사의 성과는 해당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4. 수급인이 품질전문기관에 품질시험 및 검사 등을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해당 건설공사의 품질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15조(불합격 자재의 장외 반출) 수급인은 품질시험·검사결과가 설계서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 즉시 공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제16조(재시험) 품질시험·검사에 불합격된 경우 수급인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제17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기술 진흥법」 등 관계 법령 및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을 준용한다.

부 칙

(2018.06.18. 규정 제46호)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품 질 시 험 계 획(제9조 관련)

1. 개 요

- 가. 공 사 명
- 나. 시 공 자
- 다. 현장대리인

2. 시험계획회수

- 가. 공 종
- 나. 시험종목
- 다. 시험계획물량
- 라. 시험빈도
- 마. 계획시험회수
- 바. 기 타

3. 시험시설

- 가. 장 비 명
- 나. 규 격
- 다. 단 위
- 라. 수 량
- 마. 시험실 배치평면도
- 바. 기 타

4. 시험인력배치계획

- 가. 성 명
- 나. 등 급
- 다. 품질관리업무수행기간
- 라. 기술자격 및 학력, 경력사항
- 마. 기 타

[별지 제3호서식]

품질시험·검사 의뢰서(제14조제2항제1호 관련)

①재 료 명	(* :)		
②시험·검사 종목		③재 고 량 (로트의 크기)	
④시료채취지명 및 장 소	시 구 동 도 군 면 리 번지()		
⑤시 료 채 취 량		⑥시 료 채 취 자	소속 성명 ⑨
⑦시 료 채 취 량	20 . . .	⑧시 료 채 취 입 회 자	소속 성명 ⑨
⑨공 사 명			
⑩발 주 자			
⑪시 공 자			
⑫시 험 · 검 사 성 과 이 용 목 적			
⑬시 료 내 역 및 시 방 기 준			
건설기술진흥법시행규칙 제5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합니다. 년 월 일 의뢰인 (서명 또는 인)			
* 유 별 번 호 □-□□□□-□ 시험실시번호 : 작업지시 호 (20 . . .) 시험·검사 번호 □□-□□□□ 시험·검사성과통보번호			
* 시험·검사처리소요기간 : 일간		* 시험수수료 : 원	
유의사항 : 1. 시료는 반드시 봉인하여 본 신청서와 함께 송부하여야 합니다. 2. * 표시란은 신청인이 기입하지 아니합니다.			